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지난 5월 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준비모임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어온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청소년단체, 인권단체, 교육단체, 시민 사회단체 등이 함께 결성하였으며, 전국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 협약식'을 제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경기, 인천의 광노현, 김상곤, 이청연 예비후보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 사회단체 참가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 때 : 2010년 5월 10일(월) 오후 2시
- 곳 : 한국건강연대
- 순서:
 1. 여는말
 2. 교육감 예비후보 참가자 발언
 3. 협약 체결식
 4. 기자회견문낭독
 5. 학생인권조례 학생 서명운동 전달
 6. 준비모임의 이후 사업계획 발표
 7. 폐포먼스

<협약서>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서

2010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에서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과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학생인권은 교육입니다. 학생인권이 교육의 전과정에서 온전하게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시민 사회에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학생 인권 조례를 청소년·인권·학부모·교사 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겠습니다.

하나,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교사의 인권 또한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0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장 은 숙 (서명)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 상 곤 (서명)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곽 노 현 (서명)
인천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이 청 연 (서명)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	민병희	경상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박종훈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장휘국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정만진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박영관	울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장인권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장만채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승환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병우		

<기자회견문>

2010년을 학생인권의 원년으로!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인권이다. 학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삶과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인적인 경쟁과 부당한 통제의 관습은 학생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는 초라하게 버려졌다. 학교현장에서 자의적 인권 제한이 넘쳐나고 있다는 유엔의 지적조차 잊힌 지 오래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특권과 강압, 차별과 배제가 넘쳐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두려움과 모멸감에 떨게 만드는 교육에서, 학생을 신뢰 않는 교육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를 볼모로 잡아 절망케 하는 교육에서 희망을 꿈꿀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학생의 인권을 본디 자리인 교육의 주춧돌로 돌려놓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학생 인권은 관행적으로 읊어대는 미사여구여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임시방편도, 진실을 가리는 장식품이어서도 안 된다. 학생 인권은 교육정책의 변방으로 쫓겨나거나 차일피일 유예되어서도 안 된다. 학생 인권은 교육당국의 정책 지원, 학교당국의 변화 노력, 교육3주체의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감시와 협력이 함께 갈 때 비로소 꽃핀다. 오는 6월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을 핵심 교육정책으로 삼을 것을 함께 결의한 이유다.

특히 우리는 학생인권 신장 노력 가운데 하나로서 학생인권조례가 불리울 반향에 주목한다. 조례 제정은 자유와 참여, 안전과 복지, 감당할 만한 배움과 다양성을 기치로 학생인권의 세부 기준을 공식화하는 일이다. 조례 제정은 인권문제의 해결을 호소할 공정한 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정책을 법제화하는 일이다. 조례 제정의 과정 역시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성숙시키고 학생·교사·학부모 상호간의 깨어진 신뢰

를 회복할 거름을 뿌리는 과정임에 틀림없다.

오늘 이 협약식에 함께한 우리들은 학생인권정책이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은 학생의 목소리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한다. 오늘의 다짐을 기억하며 학생이 존엄하고 평등한 교육의 밥상에 둘러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년을 학생인권의 원년으로 만들자.

2010년 5월 10일

교육감 예비 후보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이청연(인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정책 협약식 참여 연명 단체 일동

(교육공동체‘나다’, 군인권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동성애자인권연대, 두리하나공부방, 문화연대, 다산인권센터, 범국민교육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학벌없는사회, 공공노조서경지부학교비정규직분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살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교육자치를 위한 군포시민의 모임, 수원사람연대, 수원KYC,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관악동작지역학교운동위원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경기교육운동연대‘꿈’, 경남교육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학생행진)

<자료 1>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의 의의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학생인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학생이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권리를 맞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상식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86년 오늘은, 교사들이 군사정권의 폭압 아래에서도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한 날입니다. 교육민주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육이 정권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 교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학생이 자유를 누리고 배움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교육의 민주화는 완성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지만, 학생인권은 더더욱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태풍의 눈이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 주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평등하게 밥 먹을 권리는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육되는 동물에게 똑같은 사료를 나눠준다고 해서 동물의 인격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교육의 밥상에는 먹을 것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 참여, 복지, 안전, 학생이 육체적·정서적·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 이 모든 것이 올라간 밥상이어야 제대로 된 밥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2010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예비후보들이 여럿입니다. 서울, 경기, 전북, 전남, 광주 등. 또한 학생인권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은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대다수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학생인권이 민주와 진보의 표준으로, 시민사회의 상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온갖 불이익과 모욕을 감수해야 했던 학생인권운동이 작게나마 거둔 결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 공약이 2010 교육감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미 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의해

추진되면서 많은 우려와 갈채를 한 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빚어졌지만, 그 바람에 우리 사회가 학생인권을 좀더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학습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18조4항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교직원 등에게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선언에 불과하지 않도록 구체적 실천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제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힘있게 제정되고 책임있게 이행되고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만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 당사자는 물론, 교사, 학부모, 우리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모시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신장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대사회적으로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상대방으로 참여하는 우리 인권·교육·사회단체들도 학생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을 견인·협력하며 아래에서부터 학생인권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자료2>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사업계획

지난 5월 6일 학생, 학부모, 인권 및 제 교육 시민 사회단체 등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준비모임은 그동안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학생조례 제정'을 전국화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공세는 학생인권을 더욱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자율화조치라는 미명하에 부활된 0교사와 야간자율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 인권적인 조치들은 일제고사, 교원평가와 같은 평가와 점수를 통한 서열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사고 등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이자 입시몰입학교의 확대는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서열화하고 입시경쟁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제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또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한편 학생인권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발규제는 불가피하다"거나 심지어는 "학생인권에 대한 강조는 교권을 침해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절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간의 소통이 요구됩니다.

□ 더욱 중요하게 조례제정은 형식적인 서명이나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적인 것으로 왜곡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의 제 주체들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생인권의 개선이 단지 학생인권조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학생인권의 문제가 입시경쟁체제를 비롯한 제반의 교육시장화와 그리고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문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의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시민 사회단체 제 주체들이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학생인권침해사례 전국실태조사

- 조례제정이 몇몇 전문가들의 탁상에서의 작업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의 생생한 요구가 담겨지지 위해서, 그리고 학생인권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실사구시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이를 위해 준비모임은 제 교육주체들과 함께 학생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의 의의를 더욱 대중적으로 확인받고, 조례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와 근거를 만드는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 시민추대방식의 교육감 후보들이 조례 제정을 약속하더라도 이 일을 **해당 지역 교육감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자기 요구로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 나아가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도 대중적인 요구와 참여에 기반한 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순회토론회의 성과에 기반 하여 향후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 청소년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그 의의와 함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조례제정은 학생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틀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입시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례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학생인권조례는 그 의의에도 학교안의 학생에 대한 인권으로 그 공간적인 범위가 제약됩니다. 즉 학생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실이나 학교밖의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은 조례를 둘러싼 협의의 논의와 실천에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 문화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에 취약합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모임은 청소년 인권개선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등을 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주요한 교육주체들이 모여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학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등이 함께 청소년에 억압적인 학교문화와 사회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자료3>

학생인권, 왜 핵심 교육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 학생인권, 왜 교육혁명의 핵심인가?

-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학생인권의 반대편에는 통제, 강압, 불평 등, 차별, 획일, 특권, 배제, 권력독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정책은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인권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다양성을 교육의 초석으로 삼아 차별에 맞서는 학교 △자유의 공기를 흡입하면서 책임감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교 △다양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학교 △학생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굴러가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교육’은 자유로운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닙니다.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입니다. 자유와 참여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생 위에 군림하는 교육, 특권과 차별을 양산하는 교육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봐도,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전받고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시민으로,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합니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청소년들을 무대에서 쫓아내기 위해 학생을 억압하는 통제장치들과 경쟁교육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이 교육혁명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 더불어 학생인권이 보장돼야 교사 인권, 학부모 인권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훈육과 경쟁 시스템 속으로 몰아넣고 감시하는 간수(看守)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와 자녀의 관계 역시 피폐해지고 폭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정권과 교육체계가 부여한 간수(看守)의 역할을 그만둘 때, 그들의 삶도 좀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강압과 통제와 차별을 거둬낼 때 진정한 교육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구조적 약자인 학생 위에 군림함으로써 권위를 유지하려는 관행이 사라지고, 정권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교권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담기나?

1)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공식화합니다.

- 학교현장에서는 두발·복장규제, 체벌, 소수자 차별, 강제 야자와 보충, 종교 강요, 학생자

치활동 탄압 등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공식적 규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례는 학생의 자유, 복지, 안전, 교육, 참여에 대한 권리는 물론, 성적·성별·장애·빈곤·다문화 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게 될 것입니다.

2)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구제기구를 설치합니다.

- 막상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도, 학생인권을 후퇴시킬 조치가 취해져도 막상 어디에 다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봐도 묵묵부답이고 국가인권위나 사법기관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구조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일례로 '학생인권옹호관'(일종의 옴부즈퍼슨 제도)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법제화합니다.

- 학생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생참여 진흥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이런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무엇을 일구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본격화는 조례 제정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학생인권에 관한 고민을 숙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학생인권이 학생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지를 깨닫는 계기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모델을 만드는 실험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2) 학생들을 변화의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 가장 중요하게는 학생들이 변화의 경험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가 학생들 자신의 삶의 문제와 만나 흡입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침묵과 체념의 문화를 넘어 변화의 주역으로 나설 때, 경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교육현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3) 교육3주체의 연대를 기초로 지역활동을 강화합니다.

- 학생인권이 보장될 때 갈등으로 얼룩진 교육3주체 사이의 실질적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각 지역별 연대활동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